#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01

발의연월일: 2025. 1. 17.

발 의 자:신장식·김준형·차규근

김선민 · 서왕진 · 민병덕

김재원 • 이해민 • 이성윤

이기헌 • 윤준병 • 이수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이 장기 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등이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 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오히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이 행한 직무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이 문제되어 면직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도록 하여 해임 요청 사유의 객 관적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신뢰 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

법률 제 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3. 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위원이이 법 시행 이전에 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u>다</u>	<u> </u>
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u>&lt;단서 삭제&gt;</u>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u>&lt;신 설&gt;</u>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u>&lt;신 설&gt;</u>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
	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u>&lt;신 설&gt;</u>	3. 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
	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법
	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
	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u>&lt;신 설&gt;</u>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
	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
	<u>하게 할 수 있다.</u>